

(參 照)

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의 안	979
번 호	

2000. 9. 22.

1. 제안이유

-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(대통령령 16,879호 — 2000. 7. 1) 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 제도가 변경되므로써 지방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의회운영에 내실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동 조례 제4조 제1호에 총선이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를 7~ 8월에 집회하도록 하였던 것을 9 ~ 10월로 하고
- 동조 제2호에서는 제2차 정례회의를 매년 12월 5일에 집회하도록 하였던 것을 매년 11월 25일로 하며
- 동 조례 제5조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 실시하고자 하는 것 임.

3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(대통령령 16,879호) 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므로써 상위 법령에 부합됨은 물론 의회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복지 실현과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위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.